

1920~30년대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문제와 ‘박회병 사건’*

변 은 진**

머리말

Ⅰ.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사건의 현황과 성격

1. 신문 보도로 본 항일운동 관련 고문치사 사건

2. ‘독립유공자’로 본 고문치사자 현황과 성격

Ⅱ.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문제의 대응과 ‘박회병 사건’

1.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문제의 대응 양상

2. ‘박회병 사건’을 통해 본 대응의 성격 변화

맺음말

국문초록

근대국가에서 고문 행위와 그로 인해 ‘예정’된 고문치사 문제는 법치국가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근대 사회에서 ‘고문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것은 법적 규정일 뿐으로, 현실 세계에서 고문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늘 존재해왔다. ‘문화통치’를 표방했던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사회도 예외는 아니었으며, ‘사상범’이나 ‘정치범’으로 지목된 항일운동가들에게는 특히 그러했다. 본문에서는 먼저 2장을 통해 1919년 8월부터 1937년 7월 사이에 일어난 항일운동가 고문치사의 현황과 성격을 당대 신문 기사 사례 20여 건과 오늘날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인물 사례 총 125건을 통해 살펴보았다. 항일운동가 고문치사자는 지역적으로 함경남북도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6A3A0104534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교수(bdbbej@naver.com).

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기의 혁명적 대중조직운동이 함경도에서 많이 전개된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3장에서는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 양상, 즉 부검과 가해자 고소, 동지장을 통한 추모 등과 더불어 피해자 측의 대응이 절정에 달했던 ‘박휘병 사건’에 대해 살펴보았다. 1933년 함남 원산서에서 일어난 ‘박휘병 사건’은 1930년대 들어 가해자인 고문 경찰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는 속에서, 피해자 유족 측이 우가키 조선총독을 상대로 5,000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이었다.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재판의 결과는 물론 패소로 끝났지만, 이 사건은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도 자유로운 개인의 존재와 인권 의식의 성장,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발전을 잘 보여준다. 또한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가 폭력에 대한 국가보상’의 문제를 제기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주제어: 고문치사, 고문, ‘문화통치’, 태형령, 박휘병, 항일운동가

머리말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2호는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법적으로 누구나 고문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물론 현실은 이와 다르게 진행되기도 하여, 여전히 「고문방지법」의 제정 등이 논의되기도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누구에게나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동서양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초역사적으로 행해져 온 고문(拷問)¹⁾은 ‘근대’로 전환되는 18세기 중후반 이래 공식적으로는 금지 또는 폐지의 과

1) 고문이란 “처벌을 목적으로, 자백이나 정보를 이끌어낼 목적으로, 또는 가학적인 쾌락을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나 정신에 대하여 격심한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다(김태천, 「고문의 정의 -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적용과 관련하여」, 『저스티스』 87, 2005, 79쪽). 전근대 조선 사회에서는 唐律에 따른 용어인 拷訊 또는 刑訊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拷問은 일본 도쿠가와 시대에 많이 쓰였다(심희기, 『한국법제사 강』, 삼영사, 1997, 222쪽).

정을 거쳐왔다.²⁾ ‘고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노예가 존재하던 고대 사회의 ‘무차별적 고문 시대’에서 중세 사회의 ‘합법적 고문 시대’를 거쳐³⁾ 근대 사회의 ‘불법적 고문 시대’로 전환해온 셈이다.

근대 국민국가에서는 명시적으로, 특히 ‘절대로’라는 강조어와 함께 법적으로 고문 금지를 규정해왔다. 하지만 19세기 말, 20세기 초 일본의 경우는 약간 달랐다. 일본은 1879년 10월 「태정관포고(太政官布告)」에 의해 공식적으로 고문제도가 폐지되었다. 또한 1882년에는 형법상으로 경찰관에 의한 고문 처벌을 ‘독립된 범죄 유형’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폐지를 확실시하였다. 이에 대해 다른 나라와 달리 일본에서는 ‘절대로’라는 단서를 넣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적하며 많은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⁴⁾ 그래서인지 실제 현장에서는 고문이 계속 발생했으며, 특별고등경찰을 두어 사회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 등 사상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고문하는 행위는 지속되었다.

조선에서 고문은 한말까지 계속 합법으로 남아있다가, 1907년 통감부가

- 2) 최초로 고문이 공식적으로, 즉 법적으로 폐지된 것은 18세기 말 스페인의 구스타프 3세에 의해서였다(체사레 베카리아, 볼테르 해설, 김용준 옮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이다북스, 2022, 80쪽). ‘근대 형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베카리아가 1764년 이탈리아에서 출판한 『범죄와 형벌』은 곧바로 금서가 되었지만, 18세기 말까지 일본어를 포함한 무려 22개국 언어로 번역되었고, 당대 신문에서도 고문을 비판하면서 이를 소개하기도 했다(『月曜論壇 拷問廢止의 法的論據 - 베카리아의 思想(李晶燮)』, 『中外日報』 1930.9.15).
- 3) 동서양을 막론하고 중세 사회에서의 고문은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합법적 틀 속에 존재했다. 조선의 推鞠은 일반적으로 ‘심문-진술-형신(고신)-재심문-자백(結案)-照律-처형’의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대부분 자백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문은 필수였다(김우철, 「조선후기 推鞠 운영 및 結案의 변화」, 『민족문화』 35, 2010, 211-212쪽). 즉 고문이라는 행위는 일종의 ‘정치적인 행사’로서 ‘야만의 상징’은 아니었다(오항녕, 「조선후기 추안(推案)에서 만난 주체의 문제」, 『中國語文論譯總刊』 34, 2013, 82쪽). 서양 고전주의 시대의 고문 역시 “엄격한 사법적 행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 2022(개정 2판 4쇄), 90쪽).
- 4) 手塚豊, 「明治初年の拷問制度:その廢止過程の一研究」, 『法學研究:法律・政治・社會』 25, 慶應義塾大學 法學研究會, 1952, 230-232쪽.

한국의 재판 실태를 종합하여 개혁해야 할 사항을 논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고문 폐지 방침이 결정되었다.⁵⁾ 하지만 강점 이후 총독부가 1912년 3월 18일 「조선태형령」을 공포함으로써 사실상 고문이 다시 ‘합법화’된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원래 태형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과정이 아니라 죄가 확정된 후에 내려진 형벌의 일종이었지만 전근대에서는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심문 과정에서의 고문이 합법이었기 때문에,⁶⁾ 식민지 조선에서는 태형령의 부활을 심문 과정에서 고문해도 되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받아들였다.⁷⁾

이러한 분위기에 제동을 건 것이 바로 대규모 근대 민족운동인 3.1운동이었다. 1917년 말에서 1918년 초 일제당국은 태형을 대용형에서 법정형으로 전환하고 집행 범위를 확장하려고 시도했다가, 3.1운동을 계기로 그 폐지안을 제출했다.⁸⁾ 일제는 1920년 3월 31일 「조선태형령」 폐지를 공포했고, 조선 사회 내에서는 이를 태형 자체의 폐지만이 아니라 심문 과정에서 고문의 금지로도 받아들였다. 하지만 1910년대 내내 일상적으로 자행되던 고문은 이른바 ‘문화통치’를 내건 192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리고 일상적인 고문의 만연이 끝내 인간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고문치사’로 귀

5) 이는 “민사와 형사사건을 막론하고 소송 관계인을 고신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하여, 1907년 6월 27일 「신문형에 관한 건」으로 반포되었다(도면회, 『한국 근대 형사 재판제도사』, 푸른역사, 2014, 431-432쪽).

6) 푸코는 “18세기에 사법상의 고문은 진실을 생산하는 의식이 처벌을 부과하는 의식과 병행하는 기묘한 구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신체형에서 심문당하는 신체는 징벌의 적용 지점이자 진실 강요의 장소이다.”라면서 “고문에 따르는 고통은 처벌을 위한 조치이자 동시에 豫審 행위”라고 했다(『감시와 처벌』, 94쪽).

7) 이러한 식민지적 遺制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에서 제헌국회에서도 심문에 고문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점의 하나로 등장했던 것 같다. 裴憲 의원이 ‘審問에 拷問이 포함되는가’를 질의하자, 權承烈 전문위원이 “拷問은 卽 犯罪行爲”라고 답변한 데서 알 수 있다(『제국국회 속기록으로 보는 헌법제정과정』, 『헌정사자료DB』,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8) 염복규, 「1910년대 일제의 태형제도 시행과 운용」, 『역사와 현실』 53, 2004, 213-214쪽.

결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런데 태형이 주로 경범죄자 위주로 집행되었던 만큼, ‘문화통치’ 하의 고문치사 사건도 정치범이나 사상범만이 아니라 절도 혐의자나 법규 위반자 등 평범한 조선인 누구든 고문치사를 당했다는 특징을 보였다. 태형제도 폐지가 ‘문화통치’의 상징으로 선전되던 상황에서 이렇게 빈번한 고문치사 사건 발생은 조선 내에서만 아니라 일본 제국의회에 서까지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⁹⁾

게다가 일제 당국은 조선인 일반에게 수시로 ‘비국민(非國民)’¹⁰⁾이라는 말을 던졌다. 이에 대해 반발했다가 구속되고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국민 국가의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으로 내팽개쳐질 수밖에 없었던” 버림받은 사람들, 이들은 “결국 ‘국민’의 외부로 추출되어 단순한 ‘인간’으로 환원된 존재자는 역설적으로 ‘인간’의 권리 자체를 박탈당해 버린다”는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¹¹⁾ ‘비국민’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인권 자체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엄청난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다수가 ‘비국민’으로 취급받던 조선

9) 1920년대 이래 일반적인 고문치사 사건의 현황과 성격에 대해서는 변은진, 「신문 기사를 통해 본 일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1920~1936)」(『남도문화연구』 47, 2022) 참조.

10) ‘비국민’이라는 용어는 특히 전시체제기에 많이 사용되었지만, 한말 이래 근대적인 ‘국민’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1909년에 일본인의 『布哇新報』 수십 장에 ‘비국민’이라는 세 글자를 써서 신문사로 보낸 일로 다수가 구류되기도 했으며(『新韓國報』 1909.6.15.), 「ツ非國民/一町内の鼻摘み男 /係員及び有志の大憤慨/兵士の宿泊を拒絶」(『釜山日報』 1918.9.13.), 「自治派는 非國民 卽 韓民의 聲明書概要」(『時代日報』 1924.6.6.) 등 신문 기사에서도 지속적으로 확인된다. 또 군자금 모집 과정에서 이에 응하지 않자 ‘비국민’이라며 군법에 의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도 보인다(『安錫喆 및 任正淳의 不逞鮮人에 拉致 건』,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22』 1920.10.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11) 한나 아렌트가 ‘영역 내의 모든 주민을 민족적 귀속과는 관계없이 법적으로 보호’한다고 하나, 현실에서 국민국가가 실제로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보편적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민족적 귀속을 같이하는 특정한 ‘국민’의 권리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 것을 우에노 나리토시가 재해석한 것이다(우에노 나리토시, 정기문 옮김, 『폭력』, 산지니, 2006, 38-39쪽).

인에게는 근대적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 즉 ‘고문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것은 애초에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문화통치기’ 고문치사자의 절반 이상이 정치범이나 사상범이 아닌 보통의 조선인이었던 점도¹²⁾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제강점기 ‘비국민’의 상징성은 ‘불령선인(不逞鮮人)’으로 칭해지던 항일운동가들로 대표된다. 이 글에서는 ‘문화통치’를 주창하며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총독으로 부임한 1919년 8월부터 중일전쟁이 일어난 1937년 7월 사이에 일어난¹³⁾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사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전환했다고 선전하던 그 시기에 일제 당국의 고문으로 죽음을 맞은 항일운동가들의 현황,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남겨진 자들의 대응 방식과 성격, 그리고 피해자 측 대응의 정점을 보여주는 사례인 ‘박휘병(朴輝秉) 사건’¹⁴⁾ 등을 검토한다. 특히 고문치사 사건 이후 피해자 측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¹⁵⁾ 국민주권의 근대국가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군국주의·국가주의 성격을 띤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고 있던 평범한 조선인이 근대적인 인간의 생명권과 인권 문제, 국가와 개

12) 변은진, 「신문 기사를 통해 본 일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1920~1936)」, 36-39쪽 참조.

13) 사실상 전체 일제강점기에서 그나마 이 시기만이 몇몇 ‘고문치사 사건’의 내용과 대응을 살펴볼 수 있는 1차 자료, 즉 신문 기사가 존재한다. 이 말은 ‘문화통치기’ 전인 무단통치기와 후인 전시체제기에는 실제로 진실이 가려진 더 많은 ‘고문치사 사건’의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1933년 3월 함남 원산에서 일어난 ‘박휘병 고문치사 사건’과 이후의 대응 과정을 총칭하여 ‘박휘병 사건’이라 명하였다.

15) 1920~30년대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없지만, 피해자 측의 대응에서 주요 사건들의 법정투쟁을 파악한 연구는 있다. 관련 재판 혹은 법조인의 항일법원투쟁을 다루면서 고문 문제를 분석한 경우이다. 한인섭의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경인문화사, 2012) 중 3장과 7장, 김국화의 『101인 사건을 통해 본 일제하 형사재판(1925~28)』(성균관대 박사논문, 2020) 중 2장 3절 및 3장 4절 등이 대표적이다.

인의 관계 등을 어떻게 인식해왔는지 파악해보고자 한다.

I.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사건의 현황과 성격

1. 신문 보도로 본 항일운동 관련 고문치사 사건

1920년 4월 1일부터 조선에서 공식적으로 「태형령」이 폐지되었음에도 심문 과정에서 자백을 얻기 위한 경찰의 고문 행위는 전혀 근절되지 않았다. 3.1운동 직후인 데다가 특히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간도와 연해주에서 무장독립투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1920년대 초부터 국내에서 군자금 모집 등이 활발해졌다. 이에 각종 형사사건의 취조 과정에서 고문은 더 일상화되어 “당시 형사사법기관에서 조선인, 특히 독립운동 혐의자에 대한 무자비한 고문은 상식”¹⁶⁾이 되었다. 심지어 아래 ③에서 보듯이 10대 청소년에게도 “극단의 고문”을 자행하여 ‘철산경찰서 아동 고문사건’이라 지탄받기도 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주모자 조희준(曹熙俊, 16세)이 ‘고문에 의한 자백’이 인정되어 즉시 특별 방면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사법당국도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화통치로의 전환의 상징을 「태형령」 폐지로 선전하던 상황에서 1920년대 초에 이렇게 빈번하게 고문사건이 발생하자, 아라카와(荒川)¹⁷⁾ 위원은 ‘제국의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를 폭로하기도 했다. 그가 폭로한 아래

16) 한인섭, 「이인 변호사의 항일 변론 투쟁과 수난」, 『애산학보』 44, 2017, 25쪽.

17) 아라카와 고로(荒川五郎, 1865~1944) 의원으로 보인다. 1893년 니혼대학 법률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정치가, 저널리스트, 교육자로 활동했다. 1904년 이래 여러 차례 중의원 의원으로 당선된 그는 1906년 한반도를 시찰하고 『最近朝鮮事情』를 쓰기도 했다(『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의 몇몇 사건을 보면,¹⁸⁾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① 성천경찰서 고문치사 사건(1920년 4월)

평남 성천군 영천면(靈川面) 대평리(大坪里)에서 윤형(尹炯)이 독립단의 협박으로 50원을 제공했다가 성천서에 체포됨. 여러 차례 고문을 당하고 매일 밤 토혈을 하다가 방환 직후 사망함.

② 철산경찰서 고문치사 사건(1920년 5월)

철산군 노이항(盧履璜)이 갑자기 체포되었다가 무혐의로 방환되었으나, 고문으로 피를 많이 흘려서 출옥 후 즉사함.

③ 철산경찰서 아동 고문사건(1920년 7~8월)

철산군 유정동(柳亭洞) 조희준이 1920년 7월 29일 동리에서 아동이 모여 만세를 고창한 사건의 주모자로 체포되고, 정우영(鄭禹泳, 26)도 교사범으로 체포됨. 조희준에게 극단의 고문을 자행함. 검사국으로 이송 후 정우영은 징역 2년을 받고, 조희준은 고문에 의한 자백으로 판명되어 즉특방면이 선고됨.

④ 안주경찰서 고문치사 사건(1920년 8월 15일)

안주군 광성준(郭成俊)이 동거인인 한문 교사 송병칠(安炳七)의 ‘시국 관계 범죄’ 혐의로 안주서에 인치되었다가 당일 밤에 즉사함. 다음날 동생 광영준(郭泳俊)에게 지난밤 심장병으로 사망했다며 시체 인수하라 명령함. 동

18) 「議會의 朝鮮關係問答(34)」, 『東亞日報』 1922.4.15; 「議會의 朝鮮關係問答(38)」, 『東亞日報』 1922.4.24; 「議會의 朝鮮關係問答(39)」, 『東亞日報』 1922.4.25; 「議會의 朝鮮關係問答(40)」, 『東亞日報』 1922.4.28. 그가 조선 관련 다수 사건을 설명한 내용 중에서 고문 관련 사례만 추출했다.

생은 평소 신체 강건한 형이 돌연사한 것은 고문의 결과라며 평양지방 검사국에 정소(呈訴)함. 검사가 공의(公醫)와 조선 의사 수명을 입회인으로 하여 검시한 결과, 전신에 흑점(黑點)과 흑선(黑線)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인은 상해치사라 감정함. 이에 동생은 검사가 상당한 조치를 하리라 기대했으나 아무 수속이 없자 재차 삼차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검사국은 계속 수리하지 않음. 결국 관여한 순사부장은 전근 조치, 순사 김성일(金聖日)과 이흥민(李興敏)은 약간의 감봉 조치로 끝남. 고문치사가 인정된 상황에서 이렇게 결론이 나자, 동생은 조선인을 토분시(土芬視)한다고 분개하여 총독부 및 도쿄의 각 대신에게 진정서를 제출함.

⑤ 서대문경찰서 고문치사 사건(1920년 8월)

미국의원단 경성 시찰 당시 전혀 불온언동을 하지 않은 김거복(金巨福)을 체포하여 고문으로 즉사시킴

⑥ 철산경찰서 고문치사 사건(1921년 2월)

철산군 참면(站面) 봉현동(鳳峴洞) 한예원(韓禮源)이 1921년 2월 체포되었다가, 극단의 고문으로 사망함.

⑦ 개천군 경찰서의 고문치사 사건(1921년 3월)

평북 순천군 북창면(北倉面) 인산리(仁山里)李大일(李大一)이 ‘시국에 대한 범죄자’라며 체포됨. 무죄를 주장하자 콧구멍에 냉수를 주입하는 등 고문하여 질식사함.

⑧ 의주서 고문치사 사건(1921년 봄)

함북 온성군 출생 황종희(黃宗熙)가 1921년 봄 만주 여행 중 갑자기 텐

진영사관경찰서에 체포되었다가 신문 후 방면됨. 과만(過滿) 처분을 받아 순사의 감시하에 의주로 돌아옴. 곧바로 의주서에 붙잡혀 가서 ‘시국에 대한 범죄’가 있다며 고문을 당함. 무혐의로 방환되었다가, 고문으로 며칠 만에 사망함.

⑨ 경성경찰부 고문사건(1921년 6월 중순)

중국지폐 위조사건 및 군자금 모집 혐의로 이중운(李重胤)을 체포하여 콧구멍에 냉수를 주입하고 죽편목봉(竹片木棒)으로 난타하는 등 고문함. 그가 결국 석방되자, 경관들은 그에게 고문 사실을 일체 토설하지 말아 달라고 간절히 부탁함.

이상은 모두 1920~21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총 9개의 사건 중 ③과 ⑨를 제외하면 모두 ‘고문치사 사건’이다. ②와 ⑥을 제외하면 모두 항일운동과 관련이 있으며, ⑤와 ⑨를 제외하면 모두 평안도에서 일어났다. 이는 1920년대 초 군자금 모집활동의 거점 지역이 평안남북도였던 점과 밀접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고문치사 사건이 “1920년대 전반기에는 한말 이래 민족주의운동이 활발했고 국내 군자금 모집활동의 거점인 평안도에 집중되어 있고, 192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주의운동과 혁명적 대중투쟁이 활발했던 함경도에 집중”¹⁹⁾ 되었다는 언급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항일운동이 활발한 시기에 해당 지역에서는 항일운동 혐의자뿐만 아니라 절도나 강도 등 일반적인 피의자에게도 더 강하게 고문하면서 자백을 강요했음을 알 수 있다.

심문 과정에서 고문의 만연이 다수의 ‘고문치사 사건’을 발생시키는 것은

19) 변은진, 「신문 기사를 통해 본 일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1920~1936)」, 36쪽.

필연적이다. 아라카와 위원이 언급한 위 7건의 고문치사 사례는 제외하고, 이 시기 신문 기사를 통해 항일운동 관련으로 추정되는 고문치사 사건 사례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²⁰⁾ 이 사례들을 보면 1930년대 부터는 고문치사자의 대부분이 함경도 등지의 혁명적 대중운동 관련자임을 알 수 있다.

한글 신문을 중심으로 한 당대 언론에서는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보도와 함께 사설 등을 통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1920년대 전반기에 태형제도의 폐지가 선전되던 상황에서 1910년대 ‘헌병시대’보다 고문이 더 심해졌다는 비난에서부터 시작하여, 1920년대 중후반을 거치면서 비판 여론은 더욱 높아져 갔다. 유죄 확정 이후 형벌의 일종인 태형과 유죄 입증을 목표로 자백을 얻기 위해 심문 과정에서 자행하는 고문은 명백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태형제 폐지를 “총독부 방침으로 고문을 금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언론에서는 이를 비판했다.²¹⁾ 한편 1930년대 들어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사건이 더욱 빈발하고 사회적 비판 여론도 높아져 간 것은 이 시기에 사회주의 계통의 항일투쟁이 격증한 상황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자백을 얻기 위해 일제 경찰은 더욱 심한 고문을 가했고, 그 결과 ‘고문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20) 위의 논문에서 <표1: 신문 기사(1920.4~1937.6)를 통해 본 ‘고문치사 사건’의 현황(총 40건)> 중에서 해당 부분을 발췌했다(18~21쪽).

21) 언론을 통한 사회적 비판 여론의 고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 논문의 3장(한글 신문을 통한 비판 여론의 고조) 참조.

일시	지역	차사자	고문자	내용(범위)	경위	대응	결과	출전
1 1921.4.18	황해 평산	李壽三(23)	南川署 物屋驛在所 所 舍사 周藤沙光, 日正 洗光	독립단원을 자택에 묶어 함	친정에 매달고 구타 등 수 차례 고문 후 인치 도중 사망	周藤은 독직 상해치시죄, 周藤 표는 불법체포 감금 상해치사죄로 고소	형소장에서 주동 징역 5년, 周藤표 4년 선고	동아/조선 21.9.16
2 1924.12.21	평남 개천	金漢鎮(32)	개천서 수사 黒木 和 李達浩	31운동 때 기소중지 처분, 살인미수 혐의	무수히 난타, 고문, 부검 후 전신 타박상 확인	"병사라면 인순하되 타살이더니 우리는 받을 수 없다. 며 동고, 고소	개천서장이 20월 주 어 징례	조선 24.12.27, 25.1.1
3 1925.6.13	충남 중앙	宋炳采	정양서	청양: 홍성 일대 부호들 에게 독립운동자금 모집	체포 당일 밤 급사, 경찰은 자살 주장	당질 宋守完이 감시국에 고소, 부검 후 자살 판명, 친족은 계속 불복		조선 25.6.24
4 1927.3.21	평남 성천	高某	良馬驛在所	모 사건 피의자	취조중 급사	고문차사로 의심		조선 27.3.23
5 1927.11.15	함남 단천	李永培(37, 본 적 등 불명, 몸 껍이)	大新驛在所	강도 혐의(군자금 모집?)	유치장에서 급사, 부검 후 구타 발진, 병사로 발표하며 절대밀에 불임	친형제 같은 崔官福, 金在澤이 병문, 단천·성진 내 각 단체가 鄭川警察疑難事件으로 조사, 사회화 결의		조선 1927.11.22, ~12.2
6 1931.2.1	함남 정평	李鉉櫻(38)	정평서	전 농민조합 집행위원장	병원 이송 후 즉사, 부검 후 사인은 담석증 발표	차기 고문차사 주장, 계속 의심		동아 31.2.3
7 1932.1.23	함북 중성	崔某(간도 방 면에서 들어 음)	潼關洞在所	강도 혐의(군자금 모집?)	취조중 즉사	부인 방문, 부검 후 고문차사 확인		조선 32.1.29
8 1933.3.13	함남 양산	朴輝秉(25)	원산시 高野秀雄, 若本五郎, 金昌朝	덕영농민조합 재건 사건으로 예비검속	물고문, 난타로 심장마비, 가족의 주장으로 부검 후 고문차사 판명	독직 상해치시죄로 고소, 同宗 崔 가형, 조석총독 상대로 양자 55원원 소송 제기, 시회단체 장	파면, 은금 취소, 高野 징역 2년, 2인은 2년에 징역 3년	동아/조선/조선 중앙/매일 등
9 1933.4.23	함남 북청	趙宇(27)	북청서 주임 后藤 二六, 北井俊民	북청적색농민조합 거부	취조중 고문차사	살인 독직죄로 기소, 집행유예 결과에 대해 감사가 항소	后藤 징역 2년에 징 유 5년, 北井 6월에 2년	동아/조선/조선 등
10 1934.2.12	함남 정평	元龍年(31)	정평서 수사 大久 保勇藏, 松本勝一	정평농민조합 재건운동	최초 10여 분만에 즉사, 부검 후 고문차사 확인	함께 감기 후 석방된 부인 등이 독직사건으로 고소, 변호사 元澤淵	각기 징역 1년 반 인 도	조선/동아/매일 34.2.16 ~5.21
11 1934.4.25	강원 통천	金洛九	경부 小路俊雄	적색농민조합운동의 거두	도경찰부 고등계 경부가 자질 자기고문	독직 상해치사 사건		조선 34.10.21
12 1935.5.13	경북 김천	崔仁根(22)	김천서	비밀결사 혐의, 김천군 동회 지도원	40여 명 취조중 급사, 고문차사 이념 주장	부검 후 뇌진탕 판정, 의혹 제기	극반하여 매장 방도 없음	조선/동아 35.5.1~4, 19

2. ‘독립유공자’로 본 고문치사자 현황과 성격

실제로 항일운동 관련자를 고문치사한 사례는 위에서 제시한 건 외에도 다수가 있었다. 위의 사건들은 어디까지나 당대 신문 기사를 통해 사건이 보도되거나 어느 정도 여론화된 몇 개의 사례에 불과하다. 이 외의 수많은 항일운동가 고문치사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날 대한민국정부가 ‘독립유공자’로 인정한 인물들 가운데 고문치사로 순국한 다음 사례들을 통해 그 현황과 실상을 보완하고자 한다.²²⁾

	성명	출생	순국	연령	출신	주요 활동	고문 순국의 경위
1	金斗三	1893	1919.8.21	27	제주	法井寺 항일투쟁	고문 여독으로 옥사
2	金奉和	1882	1919.12.1	28	제주	法井寺 항일투쟁	고문 여독으로 옥사
3	金致河 (1853)	1919.12	67	평북 자성	3.1운동, 독립운동자금 모집	고문으로 옥사	
4	朴文華 (1869)	1919	51	평북 자성	3.1운동, 독립운동자금 모집	고문으로 옥사	
5	林炳完	1887	1920.3.10	34	충남 논산	군자금 모집	종로서 취조 중 고문치사
6	許碩	1857	1920.4.24	64	경북 군위	경술국치 항일 선전 활동	만기출옥 3일 만에 사망
7	趙鳳鎬	1884	1920.4.28	37	제주	독립희생회, 군자금 모집	옥고 중 사망
8	金鍾澤	1889	1920.8.26	32	전남 영광	군자금 모집	공판 중 병보석 직후 사망
9	方一鎭	1888	1921.1.29	34	평북 정주	光韓團, 군자금 모집	고문으로 병보석 직후 사망
10	權學圭	1886	1921.2.9	36	경기 고양	3.1운동 1주년 기념	고문으로 병보석 직후 사망
11	金基石	1904	1921.4.3	18	함남 원산	一心團, 만세시위	고문 여독으로 출옥 후 사망
12	鄭圭桓	1900	1921.4.16	22	경남 함양	군자금 모집	고문으로 가석방 직후 사망
13	鄭南用 (1896)	1921.4.18	26	강원 고성	大同團, 의친왕의 상하이 망명 추진	고문 여독으로 옥사	

22) 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의 공적조서 및 공훈록을 중심으로 ‘고문’, ‘고문치사’, ‘옥중 순국’ 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여 조사했다. 1919년 3.1운동 관련자로서 1920~30년대에 고문으로 사망한 자, 1920~30년대 활동했더라도 1937년 7월 이후 사망자, 국외의 독립운동으로 순국한 자 등은 제외했음을 밝혀둔다. 표에서 ‘연령’은 순국 당시의 연령을 추정한 것이며, 李鉉稷(63번)의 나이는 당대 신문 기사를 따랐다.

	성명	출생	순국	연령	출신	주요 활동	고문 순국의 경위
14	張斗煥	1894	1921.4.28	28	충남 천안	광복단, 군자금 모집	옥고 중 사망
15	金俊杰	(1891)	1921.6~7	31	평남 대동	대한독립대동청년단, 군자금 모집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
16	金豐燮	(1897)	1921.6~7	25	평남 대동	대한독립대동청년단, 군자금 모집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
17	李鍾株	1901	1921.7.13	21	전북 고창	3.1운동 1주년 기념, 형무소 내 독립만세운동	고문으로 옥사
18	朴雲竹	1896	1921.7.18	26	평북 용천	조선독립보합단, 군자금 모집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
19	朴周錫	1864	1921.7.24	58	제주	法井寺 항일투쟁	고문 여독으로 옥사
20	金澤龍	1896	1921.7.27	26	경북 영일	吡叻敎 계통	옥고 중 사망
21	朴仁角	미상	1921	미상	평북 선천	대한청년단, 군자금 모집, 면사무소 습격, 친일 면장 총살	고문으로 옥사
22	李周鎬	(1881)	1921	41	충남 부여	광복단 논산지단장, 군자금 모집	옥고 중 사망
23	崔昌翊	(1903)	1921	19	평남 평원	대한애국부인회	모친과 함께 옥고 중 사망
24	鄭行國	1896	1921.11.11	26	경북 칠곡	반일감습, 청년운동	고문으로 병보석 직후 사망
25	金宗輝	1891	1922.1.11	32	경북 의성	吡叻敎 계통	옥고 중 사망
26	崔正元	1892	1922.5.3	31	경남 고성	서로군정서의 군자금 모집	고문 여독으로 옥사
27	金龍植	1896	1922.6.27	27	함남 북청	군자금 모집, 청년운동	빈사 상태로 가석방 후 사망
28	趙鍾大	1873	1922.7.25	50	황해 금천	대한독립애국단 강원도단	고문으로 옥사
29	金敦熙	(1867)	1922.8.30	56	경남 의령	조선독립후원의용단 간부, 군자금 모집	고문 취조 중 사망
30	羅章憲	1890	1922.10.22	33	평북 회천	대동단, 군자금 모집	옥고 중 사망
31	金學洛	(1895)	1922	28	함남	임시정부 함남교통사무국 통신원	일본인 검사에게 구타 고문, 3일 만에 옥사
32	郭致文	(1882)	1922	41	평남 대동	국민향촌회, 군자금 모집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
33	高貞植	(1884)	1922	39	전북 전주	군자금 모집	옥고 중 사망
34	韓利敬	(1883)	1920년대	30대	평북 의주	보합단, 군자금 모집	옥고 중 사망
35	李明均	1863	1923.5.10	61	경북 대구	군자금 모집	예심 중 병보석 직후 사망
36	金淑	(1881)	1924.3.7	44	평남 강서	평양형무소 3.1운동 5주년 기념 만세운동 및 단식투쟁	투옥 중 고문치사
37	李東一	(1891)	1924.3.7	34	경기 개성	평양형무소 3.1운동 5주년 기념 만세운동 및 단식투쟁	투옥 중 고문치사(형무소 측은 신장염이라 보도)
38	梁仁煥	1898	1924.5.13	27	서울	'독립운동 사건(1918)'으로 7년형	고문으로 병보석 직후 사망
39	金洪烈	1898	1924.11.28	27	전북 옥구	3.1운동, 三省俱樂部	고문 여독으로 사망

	성명	출생	순국	연령	출신	주요 활동	고문 순국의 경위
40	李陽燮	1894	1925.5.19	32	경기 안성	형무소 내 독립만세운동 계획	심한 고문으로 옥사
41	金仲甫 (1889)	1925.6.4	37	평북 회천	독립청년단, 주재소 등 습격 및 일본 순사 처단		옥고 중 사망
42	宋英秀 (1893)	1925.6.23	33	평북 회천	독립청년단, 주재소 등 습격 및 일본 순사 처단		옥고 중 사망
43	崔淳鐸	1892	1926.2.10	35	함남 함흥	3.1운동, 문화운동, 사회운동	재검거(1925) 후 옥사
44	朴純秉 (1901)	1926.8.25	36	함북 온성	조선공산당 활동		신문 도중 고문으로 사망
45	千洪泰	1903	1927.6.18	35	전남 완도	배달청년회, 항일의식 고취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
46	全協	1876	1927.7.10	52	서울	大同團 단장	고문으로 가축옥 직후 사망
47	白光欽	1895	1927.12.13	33	경남 부산	노동운동, 조선공산당	병보석 직후 사망
48	朴吉陽	1896	1928.1.19	33	경기 강화	군자금 모집, 고려공산청년회	예심 진행 중 옥사
49	宋重植 (1899)	1928.5.18	30	황해 송화	군자금 모집		옥고 중 사망
50	權五敦	1900	1928.6.3	29	경북 안동	조선공산당, 6.10 만세운동	병보석 직후 사망
51	申鉉圭 (1888)	1928.8.12	41	충북 괴산	군자금 모집		경찰 심문 중 옥사
52	成鳳眞 (1908)	1928.11.21	37	경기 고양	경성출판노동조합		경찰 심문 중 병원 이송 직후 사망
53	金圭直	1909	1929.2.13	21	경남 동래	黑潮會, 경남소년연맹, 맹휴	고문으로 예심 중 옥사
54	車今奉	1898	1929.3.10	32	서울	3.1운동, 조선노동공제회, 조선노동총동맹, 신간회 경서지회,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미결기간 중 고문으로 옥사
55	申泰舜	1884	1929.6.6	46	충남 당진	천도교계 활동, 민립대학기성회, 신간회 경성지회	고문으로 사망(사회단체장)
56	俞鎭興	미상	1929	미상	경남 부산	동래고보 독서회, 맹휴 주도	고문으로 옥사
57	洪淳甲	1896	1929.10.16	34	전북 익산	3.1운동, 군자금 모집, 新民府, 고려국민당	고문 여독으로 옥사
58	陳鴻巨 (1883)	1929.10.26	47	함남 함흥	청림교, 조선공화정치국의 군자금 모집		반신불수 상태로 예심 중 병보석 직후 병원에서 사망
59	李善九	1903	1929.12.13 이후	20대	평북 선천	共鳴團, 우편파차 습격, 군자금 모집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
60	權五高	1897	1930.4.17	34	경북 안동	3.1운동, 풍산소작인회, 조선노동총동맹,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 6.10만세운동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
61	咸壽萬	1901	1930.5.19	30	충남 서산	광주학생운동 동조시위, 맹휴	고문으로 병원 이송 후 사망
62	柳今童	1909	1930.6.2	22	전북 고창	광주학생운동 동조시위, 맹휴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
63	李鉉稷	미상	1931.2.1	38	(함남 정평)	정평의 수리조합운동, 정평농민동맹	경찰 심문 중 병원 이송 직후 사망
64	韓始華 (1911)	1931.4.13	21	함남 정평	정평농민조합		병보석 직후 병원에서 사망

	성명	출생	순국	연령	출신	주요 활동	고문 순국의 경위
65	鄭東亮	1901	1931.10.2	31	충남 홍성	無空會, 소작로 인하운동, 신간회 홍성지회, 대전 일본군 헌병대에 투서	고문 후유증으로 출옥 직후 사망
66	閔樞	1883	1931.11.4	39	충북 청주	대동청년당, 3.1운동, 대동단	재차 검거 후 옥사
67	姜希玉	(1910)	1931.11.13	32	함남 영흥	서울학생맹휴 격문배포사건, 고원농민조합	검속 직후 취조 중 사망
68	梁正彥	1909	1931.11.30	23	경남 부산	黑潮會, 맹휴, 경남소년연맹	고문으로 병보석 후 사망
69	朴瀝珍	(1912)	1932.2.21	21	함북 온성	함북공산당 사건	예심 중 사망
70	朴豐稷	(1912)	1932.2.24	21	함남 홍원	경성RS협의회	옥고 중 사망
71	全亨祿	(1911)	1932	22	함북 온성	함북공산당 사건	예심 중 사망
72	金才童	1910	1932.3.14	23	제주	한영섭 동지장	복심 재판 대기중 옥사
73	高泰利	1912	1932.4.9	21	제주	항일학생운동 주도	고문으로 출옥 직후 사망
74	朴康協	(1899)	1932.4.9	34	함남 함흥	태평양노동조합 사건	체포(31.9) 후 옥사
75	李丙儀	1896	1932.4.15	37	경기 파주	군자금 모집, 조선공산당(춘경원당)	옥고 중 사망
76	白行準	1911	1932.5.9	22	평북 의주	신익주의 노동조합운동	체포(31.10), 폐병으로 옥사
77	李錫坤	미상	1932.8.8	미상	미상	태평양노동조합 사건	예심 중 옥사
78	車明輪	(1907)	1932.12 ~ 1933.1	26	함남 영흥	머슴파업사건, 영흥농민조합	예심 중 옥사
79	黃元駿	(1912)	1932.12 ~ 1933.1	21	함남 영흥	영흥농민조합	예심 중 옥사
80	權泰用	1906	1933.1.25	28	서울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미결기간 중 옥사
81	朴輝秉	1905	1933.3.13	29	함남 원산	덕원청년동맹, 신간회 덕원지회, 덕원적색노동조합	원산서 취조 중 고문치사
82	安汀玉	미상	1933.3.17	미상	미상	조선공산당 국내공작위원회	옥고 중 사망
83	金有凡	미상	1933.3.24	미상	미상	명천의 혁명적 농민조합운동	예심 중 옥사
84	徐龍河	1911	1933.4.15	23	경기 포천	예산에서 극단 만경좌의 친일 연극에 항의	재차 검거, 옥사
85	朱正道	(1908)	1933.5.22	26	(함남 영흥)	영흥농민조합, 영흥농민조합 재건위원회	고문 여독으로 최종 판결 직후 옥사
86	李炳殷	1909	1933.6.18	25	평북 영변	평양전매국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재판 대기 중 옥사
87	太極	(1905)	1933.8.2	29	함북 명천	간도에서 활동, 원산에서 조선공산당재건운동	예심 중 사망
88	金淳熙	1908	1933.12.3	26	제주	조선학생전위동맹	고문 여독으로 옥사
89	金春培	1912	1933	22	전북 전주	동맹휴교, 전주의 사회운동, 조선공산당재건운동	판결 후 옥사
90	車顯規	미상	1933경	미상	미상	평양적색노동조합	옥고 중 사망

	성명	출생	순국	연령	출신	주요 활동	고문 순국의 경위
91	元九年	(1904)	1934.2.12	31	함남 정평	정평농민조합	경찰 취조 중 고문치사
92	朴永鎭	(1907)	1934.4.8	28	함남 함주	광산노동운동, 조선공산당 국 내공작위원회 사건	공판 개정 대기 중 옥사
93	陳基燮	1911	1934.5.23	24	(함남 영흥)	영흥농민조합, 영흥농민조합 재건위원회	고문 여독으로 옥사
94	林赫根	1898	1934.6.30	37	전북 익산	익산 사회운동, 신간회 익산 지회	옥고 중 사망
95	金東弼	1915	1934	20	경기 개성	송도고보 반제동맹, 조선공산 당재건공작위원회 사건	옥고 중 사망
96	朴文昊	1907	1934	28	경남 동래	동래 청년·노동운동, 조선공 산당재건동맹 북평지부	고문으로 출옥 직후 사망
97	尹雨植	1909	1934.10.4	26	경북 예천	예천적색농민조합, 예천무명 당, 야학회 및 소비조합	고문으로 공판 회부 전 사망
98	金東春	미상	1934	미상	(함북 성진)	성진청년동맹, 신간회 성진지 회, 성진농민조합	고문으로 미결기간 중 옥 사
99	金一鉉	미상	1934	미상	(함북 성진)	성진청년동맹, 신간회 성진지 회, 성진농민조합	고문으로 미결기간 중 옥 사
100	金東俊	미상	1934	미상	(함북 성진)	성진농민조합	예심 중 옥사
101	董時濬	미상	1934.10	미상	(함북 성진)	성진청년동맹, 신간회 성진지 회, 성진농민조합	고문으로 미결기간 중 옥 사
102	金東應	미상	1934.10	미상	(함북 성진)	성진청년동맹, 신간회 성진지 회, 성진농민조합	고문으로 미결기간 중 옥 사
103	金甲辰	미상	1934.10	미상	(함북 성진)	성진청년동맹, 신간회 성진지 회, 성진농민조합	고문으로 미결기간 중 옥 사
104	姜張龍	미상	1934.10	미상	(함북 성진)	성진청년동맹, 신간회 성진지 회, 성진농민조합	고문으로 미결기간 중 옥 사
105	朴鳳洛	미상	1934.10	미상	(함북 성진)	성진청년동맹, 신간회 성진지 회, 성진농민조합	고문으로 미결기간 중 옥 사
106	朴鳳日	미상	1934.10	미상	함북 성진	성진청년동맹, 신간회 성진지 회, 성진농민조합	고문으로 미결기간 중 옥 사
107	李鳳來	1903	1934.11.10	32	강원 삼척	농민시위 주도	고문 여독으로 옥사
108	韓永八	1891	1934~35	45	전북 임실	金農青年會, 야학운동, 전북 공산주의자협의회	고문으로 옥사
109	全他官	(1912)	1935.3.31	24	함남 정평	정평농민조합운동	고문으로 병보석 직후 사 망
110	權藝潤	1910	1935.4.1	26	경북 안동	안동콤그룹, 인쇄직공조합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
111	曹秉順	1911	1935.4.9	25	충남 부여	부여농민구락부연합회	예심 중 병보석 직후 사 망
112	金永活	(1909)	1935.5.12	27	경북 경주 추정	경주 사회운동, 경주적색비밀 결사 사건	경찰 취조 중 병보석 출 옥, 고문 여독으로 사망
113	崔仁根	1914	1935.5.30	22	경북 김천	조선공산당 김천그룹 재건협 의회	검거 직후 취조 중 사망

	성명	출생	순국	연령	출신	주요 활동	고문 순국의 경위
114	洪培植	(1907)	1935.6.4	29	함남 함흥	태평양노동조합 사건	형집행정지로 출옥 후 사망
115	李相鎬	미상	1935.12.24	미상	(함남 단천)	단천농민조합재건협의회	고문으로 예심 중 옥사
116	李德七	(1915)	1936.3.23	22	미상	조선공산당 김천그룹 재건협의회	예심 중 병보석 직후 사망
117	李樂九	미상	1936.4	미상	함남 안변	통천 농민조합운동	모진 고문으로 옥사
118	韓承謙	(1910)	1936.4.21	27	함남 정평	정평농민조합, 정평농조재건위원회	옥고 중 사망
119	柳基燮	1905	1936.5.21	32	충남 부여	부여농민조합연합회	옥고 중 사망
120	夫生鍾	1909	1936.6.29	26	제주	농민조합운동, 독서회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
121	白明欽	1909	1936.7.6	26	경기 수원	운동자금 조달, 적색노동조합운동	고문으로 빈사 상태로 석방, 당일 사망
122	李京鎬	1882	1936.9.15	55	황해 웅진	조선공산당	형집행정지로 출옥한 다음날 사망
123	金仁學	1916	1937.2.13	22	전남 완도	전남운동협의회	고문으로 병보석 이후 사망
124	崔在韶	1914	1937.3.6	24	경북 울진	울진적색농민조합	고문 여독으로 옥사
125	金斗環	1910	1937.7.13	28	제주	제주의 청년운동, 항만노동운동, 제주농민조합	예심 회부 직후 고문으로 병보석된 후 사망

위에서 소개한 총 125명 가운데 앞의 신문 기사에 소개된 12건과 중복되는 인물은 4명, 즉 정평농민동맹의 이현직(李鉉稷), 덕원적색농민조합의 박휘병(朴輝秉), 정평농민조합의 원구년(元龜年), 조선공산당 김천그룹재건협의회 최인근(崔仁根)뿐이다. 옥고를 치르던 중 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사망한 경우가 가장 많긴 하나, 경찰서 취조 중 또는 예심 회부 직후에 사망한 경우도 있다. 또 마지막 순간까지 가혹한 고문에 시달리다가 치사 직전에 병보석으로 석방된 후 사망한 사례도 많았음이 확인된다. 왜냐하면 당시 일제 경찰은 가능하면 유치장 등 경찰서 내에서 사망하는 것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에 치사 직전까지 고문하다가 병원 또는 자택으로 이송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위의 표를 토대로 일제 ‘문화통치기’에 고문으로 순국한 ‘독립유공자’ 총 125명의 사망 시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망 시기	1919.8~1925	1926~1930	1931~1937.7
인원	42	20	63

1930년대 전반기가 압도적으로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회주의 계통의 대중투쟁이 활발했던 시기에 체포된 인물이 일제 경찰의 모진 고문으로 1930년대 전반기에 순국한 경우가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태형령 폐지’를 강조하던 1920년대 전반기에도 여전히 취조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고문이 자행되었음도 확인된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져 간 상황 등으로 인해, 1920년대 중반 무렵에는 다소 ‘조심’하는 경향을 보인 듯하다. 하지만 1920년대 후반부터 대중투쟁과 조직운동의 혁명적 고조기를 거치고, 또 1932년을 정점으로 대규모로 ‘고등경찰’ 관련 인원이 증강되면서,²³⁾ 항일운동가에 대한 고문이 한층 더 가혹해졌음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독립유공자’ 중 고문 순국자들의 출신 지역과 사망 당시의 연령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의 경우 출신지는 대체로 활동지와 동일하다고도 볼 수 있다.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미상
인원	2	54	35	7	6	3	18

지역	함경	경상	전라·제주	평안	서울·경기	충청	강원·황해	미상
인원	35	20	20	17	13	10	5	5

위 표들을 통해 고문으로 순국한 항일운동가는 지역적으로 함경남북도

23) 당시 일제 경찰은 “조선 국내”로 한정시켜 보면, 1920년대 후반부터 특히 사회주의운동 및 민족협동전선운동에 대한 경계심”을 높여 갔다. 또한 “1932년에 대규모 고등경찰 관련 인원의 증강”을 정점으로 “1936년까지 비교적 소규모의 인원 증가”가 이루어졌다(마쓰다 토시히코, 이종민·이형식·김현 옮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와 경찰』, 경인문화사, 2020, 310쪽 및 490-494쪽).

가 가장 많았고, 연령은 20~30대의 젊은 층이 70%를 훌쩍 넘어 압도적으로 비중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독립유공자 포상 사업에서 38도선 이남 지역이 더 중점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을 보면, 만주와 국경을 접하여 1930년대에 국경경비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던 함경도 지역에서 고문이 더 가혹했음을 짐작케 한다. 위의 표들에서도 앞서 당대 신문 기사를 통해 살펴본 지역적 특성과 시기별 특성, 즉 1920년대 중후반 이래 사회주의 계통의 대중투쟁이 활발했던 지역적 특성과 그 참여 인물의 연령적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서대문형무소 수감자의 수형기록카드를 분석한 결과 함경남북도 출신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기존 연구와도²⁴⁾ 일치한다.

II.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문제의 대응과 ‘박희병 사건’

1.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문제의 대응 양상

일반적으로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처리는 ‘조사(가해자측) → 부검(公醫) 및 시신 인도 → 탄원서 제출 및 고소(피해자측) → 판결 → 항소(양측) → 판결 및 처분’의 순으로 진행되었다.²⁵⁾ 고문치사자의 유족을 비롯해 함께 활동했던 동지 등 피해자 측을 중심으로 볼 때, 당시 고문치사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은 크게 다음 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부검 및 항의와 가해자 고소, 두 번째는 법정 공방 등을 통한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

24) 박경목, 『식민지 근대감옥, 서대문형무소』, 일빛, 2019, 제4장 1절(157-163쪽) 참조.

25) 변은진, 「신문 기사를 통해 본 일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1920~1936)」, 28쪽. 사안의 성격 또는 피해자·가해자 측의 기본 입장에 따라 순서는 바뀔 수 있다.

별, 세 번째는 장례식 또는 장례 이후의 위령 활동이 있었다. 여기서는 우선 앞의 1장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토대로 첫 번째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²⁶⁾

‘고문치사 사건’이라는 특성상 유족들은 거의 다 부검을 신청했는데, 피해자 측의 대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일반적인 고문치사 사건 경우에도 유족들은 그 결과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대체로 부검을 신청하는 편이었고, 부검 결과 고문 사실이 입증되면 대부분 ‘독직, 상해치사죄’로 고소를 제기했으니,²⁷⁾ 항일운동가 고문치사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었다. 특히 1930년 전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한 혁명적 대중조직운동 관련자, 특히 치열한 대중투쟁이 전개된 함경도 지역의 경우 항일투쟁의 연속성 차원에서도 가해자를 고소하는 것이 일반적 분위기였다. 고문치사 사건의 경우 고소인은 유족(대리인 변호사)이었으며, 피고소인은 직접 고문을 가한 경찰에 한정되었다.

2장 1절의 <표>에서 본 사례들, 즉 언론을 통해 본 고문치사 사건 사례 12건 가운데 미확인된 4건을 제외하면 모두 부검이 신청되었다. 부검 결과 명백히 고소 제기가 확인된 사례는 7건(1/2/3/8/9/10/11)이며, 이 가운데 가해 경찰이 법적 처벌(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사례가 4건(1/8/9/10)이다. 이 사건들에 앞서 아라카와 위원이 언급한 1920~21년 사례 중 ‘④안주경찰서 고문치사 사건’에서 보듯이, 부검 결과 고문치사가 판명되었는데도 검사국에서 고소장을 수리하지 않아 유족이 재차, 삼차로 고소장을 제출하거

26) 앞서 <주 15>를 통해 언급했다시피, 세 가지 형태의 대응 가운데 두 번째, 즉 법정투쟁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을 통해 어느 정도 밝혀져 있다. 여기서는 첫 번째 사안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며, 세 번째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27) 총 40건의 고문치사 사건 가운데 고소 제기가 명백히 확인된 사례는 22건 내외로 55% 이상이였다(변은진, 「신문 기사를 통해 본 일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1920~1936)」, 32쪽).

나 국내외 각 방면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어쨌든 피해자 측에서 고소를 제기하거나 끈질기게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가해자는 휴직, 감봉, 전근, 파면, 은급(恩給) 취소 등의 처벌을 받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징역형이 부가되기도 했다.

고소를 신청하고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바로 변호사들이었다. 예를 들어 고문치사가 확실한 사건에서 부검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변호사 측에서 재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²⁸⁾ 1920~30년대 국내 항일운동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사상 사건과 혁명적 대중운동 사건들은 모두 형사사건이었으므로, 당시 ‘항일변호사’, ‘사상변호사’로 불리던 이들이 피고인을 대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전국 어디건 항일운동가들이 고초를 당한 현장을 찾아다니며 변론에 앞장섰으며, 규모가 큰 사건의 경우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²⁹⁾ 대표적인 사건이 1924년의 ‘허헌서 고문사건’이었고, 이후 조선공산당, 간도공산당 등 여러 사건에서 고문 및 고문치사 문제가 제기되었다. 허헌(許憲)을 필두로 한 항일변호사들은 형사변호공동연구회³⁰⁾라는 조직까지 결성하여 거의 무료로 법리 연구와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고문치사 사건의 경우는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가족들의 위안도 담당했다. 진상조사를 주된 무기로

28) 예를 들어 2장 1절의 〈표〉 10번 정평농민조합 재건운동의 ‘元龜年(31세) 사건’에서 변호사 元澤淵은 고문치사로 확신하면서 부검 결과가 다르게 나오면 재검정을 하겠다고 주장했다(『拷問致死로 確信, 辯護士 元澤淵氏 談, 『朝鮮日報』 1933.9.22.』).

29) 예컨대 ‘조선공산당 사건’의 경우 1927년 10월 16일 고문 경관을 고소할 때, 고소인은 권오설·강달영·전정관·홍덕유·이준태 등 5명이었는데 이를 대리한 변호인은 허헌, 김병로, 김태영, 이인, 한국중, 후세 다쓰지, 후루야 사다오 등 7명이나 되었다. 피고소인은 피고인을 직접 고문한 종로경찰서 경관 4명이었다(김국화, 『101인 사건을 통해 본 일제하 형사재판(1925~28)』, 99쪽).

30) 형사변호공동연구회에 대해서는 변은진, 『허헌 평전 - 항일운동의 선봉에 선 인권변호사』(역사공간, 2022), 235-244쪽 참조.

한 항일변호사들의 활동은 법정에서 고문 사실을 폭로하고 언론을 통해 여론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³¹⁾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중대한 고문치사 사건 가해자들이 줄줄이 집행유예를 언도받고 풀려나오는 상황이 반복되자, 일본인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한 예로 1933년 4월 함남 북청적색농민조합 간부 조우(趙宇, 27세)를 고문치사한 북청서 주임 고토(后藤二六)와 순사 기타이(北井俊民)에 대해 마쓰마에(松前謙助) 검사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월을 구형했다.³²⁾ 1933년 7월 3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서 마쓰마에는 다음과 같이 논고(論告)했다.³³⁾

재작년 단천경찰서의 고문치사 사건과 금년 봄 원산경찰서 고문치사 사건이 거듭 발생하여 누차 취조상 주의를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불법행위를 연출한 것은 함남 경찰계의 큰 불상사라. (중략) 사건의 취조는 창작이 아니거늘 부질없이 범죄의 구성을 목적 삼고 고문이라도 해서 罪跡만을 발견함이 직무상 충실한 所爲로 아는 데서 이러한 중대한 사태를 招致함이 아닌가 한다.

하지만 가해자 고토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기타이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판결되자 마쓰마에는 검사는 항소를 제기했다.³⁴⁾ 다음 절

31) “변호사가 고문 사실을 법정에서 폭로하고 고문의 진상을 밝히라고 적극 변론할 때, 고문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가열화되었다. 법정공방이 가열화될수록, 예리한 촉각을 곤두세운 언론의 지면에 날날이 공표되었다.”고 한다(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143쪽).

32) 「高等係主任에 三年, 巡査도 六個月 求刑」, 『東亞日報』 1933.7.5.

33) 「時評: 拷問致死事件 公判을 보고」, 『朝鮮中央日報』 1933.7.8.

34) 「執猶判決에 不服, 檢事가 控訴提起」, 『東亞日報』 1933.7.14; 「拷問致死馮犯 檢事が 控訴, 京城覆審法院에」, 『朝鮮中央日報』 1933.7.14. 마쓰마에 검사는 1934년 3월 20일부터 광주지방법원 보조 겸직으로 발령이 났다(『辭令』, 『東亞日報』 및 『朝鮮日報』 1934.3.23.).

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보다 조금 앞서 일어난 ‘박휘병 사건’에서도 마쓰마에 검사는 가해자 3명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터라 작심하고 항소한 것이었다. 경성복심법원의 항소심에서 이토(伊藤) 검사도 “최근 경관의 자격으로서 직권을 남용하여 피의자를 취조함에 있어서 고문치사케 한 불상사가 첩출함은 조선 경찰계를 위하여 크게 유감되는 바”라며 “준열히 논고를 한 후” 1심대로 구형했다는³⁵⁾ 데서도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한편 피해자 측의 대응은 개별적 차원의 고소를 넘어 사회문제화 되기도 했다. 예컨대 1927년 11월 15일 함남 단천의 대신주재소(大新駐在所) 유치장에서 이영배(李永培, 34세)가 ‘강도죄’ 혐의로 취조받다 급사하자, 단천·성진 등지의 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이를 ‘단천경찰 의옥(疑獄) 사건’으로 삼아 조사하고 이 문제를 ‘사회화’하기로 결의하고 있다.³⁶⁾ 특히 항일적인 사회운동가가 고문치사당할 경우, 지역의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동지장(同志葬), 즉 사회단체장(社會團體葬)³⁷⁾으로 장례를 치르고 추모하기도 했다. 이 경우 일제 경찰과 또 다른 마찰을 빚는 경우가 많았다.

35) 「北靑 瀆職警官에 一審대로 論告求刑」, 『朝鮮日報』 1933.9.15. 항소심 결과는 각기 징역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北靑農組員 拷問致死巡査」, 『朝鮮日報』 1933.9.22).

36) 1927년 11월 27일 성진청년연맹 집행위원회에서 결의한 중요사항을 보면, ‘이영배 사건’을 ‘사회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城津靑年聯盟 執行委員會」, 『朝鮮日報』 1927.12.2).

37) 일제강점기에는 동지장이나 사회단체장을 社會葬이라고도 했다. 모두 같은 의미이다. 대표적으로 아래에서 살펴볼 박휘병 사례와 앞의 2장 2절 〈표〉의 55번, 72번 등에서 확인된다.

2. ‘박휘병 사건’을 통해 본 대응의 성격 변화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1920~30년대 ‘고문치사 사건’ 피해자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부검을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명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부검 결과 고문치사 혐의가 확실시되는 경우 대부분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했다. 물론 부검 결과 당국이 고문이 아니라 병사나 자살이라고 발표한 경우에도 계속 혐의를 제기하면서 고소로 이어가기도 했다.³⁸⁾ 재판의 결과 여부에 따라 피해자 측이나 가해자 측에서는 항소에 항고를 거듭해가기도 했다.

그런데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대응을 넘어선 사례가 발견된다. 이상의 과정을 모두 거치고도 2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등 자식과 남편을 잃은 원통함이 가시지 않자, 피해자 측에서 조선총독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를 상대로 5천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국가의 잘못으로 생명을 잃었으니 정부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은 오늘날에는 거의 상식이 되어 있지만,³⁹⁾ 당시에는 “사상관계로는 초유의 일”이었다.⁴⁰⁾ 이는 ‘박휘병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유족 측의 대응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박휘병이라는 인물

38) 예컨대 1925년 6월 13일 청양과 홍성 일대에서 독립운동자금 모집하다가 체포되어 당일 밤에 급사한 宋炳采의 경우, 부검 결과 경찰이 자살이라 발표했음에도 당길 宋守完은 불복하여 계속 고소를 제기했다(『拷問致死? 自殺?』, 『朝鮮日報』 1925.6.24).

39) 물론 오늘날에도 이러한 국민적 상식이 국가의 실질적 보상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많은 난제가 가로막혀 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 과제’ 가운데 국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 및 사회통합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여전히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윤민재, 「한국의 의문사 현황과 해결 방안: 과거사 청산을 위한 정치사회학적 해법 모색」, 『민주평화연구』 3권 1호, 2020, 21쪽).

40) 「宇垣總督 相對로 慰藉 五千圓 請求, 拷問에 죽은 朴輝秉의 遺族들이, 思想關係론 初有事」, 『朝鮮日報』 1933.9.23.

과 사건의 경위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1905년 12월 3일 함남 덕원군⁴¹⁾ 적전면(赤田面) 당하리(堂下里)에서 태어난 박휘병(1905~1933)은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한 뒤 고향의 광성학교(光成學校) 교사와 『동아일보』 원산지국 기자 등을 지내면서, 덕원과 원산 등지에서 청년운동과 농민운동을 주도했다. 당우청년회(堂隅靑年會), 당우농민동맹, 덕원청년동맹, 신간회 덕원지회, 고려공산청년동맹 등에서 활동했으며, 농민야학을 열고 꾸준히 강사로 일했다. 박휘병의 집안은 유명한 항일운동가 집안으로서, 그는 친동생 박무병(朴武秉, 1911~?), 친척 박문병(朴文秉, 1905~?) 등과도 함께 활동했다.⁴²⁾ 박휘병은 고려공청 함남도 간부기관 결성을 주도하고 책임비서로 활동하던 중 1930년 1월 30일 박무병과 함께 검거되었다가 풀려났다. 이후 8월 3일 일명 ‘원산 격문 사건’으로 또다시 원산경찰서에 검거되었고, 일제는 이 사건을 ‘함남공청 사건’, ‘함남공산당 사건’으로 확대시켰다. 그는 1931년 5월 13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해 5월 20일 출옥한 뒤에도 덕원적색노동조합을 조직하고 10여 개소에 농민야학을 개설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⁴³⁾

그러던 중 박휘병은 1933년 3월 12일 이른바 ‘덕원농민조합 사건’에 연루되어 다시 체포되었다. 마르크스 서거 50주년 맞은 경찰의 예비검속 차원에서 붙잡혀간 것이었다. 원산경찰서 고등계에서 혹독한 고문 취조를 받

41) 덕원군은 현재의 원산시인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당시 원산부가 축소되면서 교외 지역을 덕원군으로 분리했다.

42) 박무병과 박순병에 대해서는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 1996), 188-190쪽 참조.

43) 『독립유공자 공훈록』 17(국가보훈처, 2009) 및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220쪽)과 신문 기사 등을 참조하여 간단히 정리했다. 박휘병은 朴休秉, 朴德三, 朴成春 등의 이명으로도 활동했으며, 200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았다.

왔고, 다음날인 3월 13일 25세의 나이에 죽임을 당했다. 12일 3시경 체포되어 7시경 원산경찰서에 도착했고 13일 오후 4시경 사망했으니, 고문 취조를 당한 지 24시간 만이었다. 그는 체포 전날인 3월 11일 원산부 내 성라리(星羅里) 안덕원(安德元) 축구대회에 선수로 출전했을 정도로 “평소에 가장 건강한 체질을 가졌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사망 당일 저녁 6시경 경찰이 자동차로 부친 박승진(朴承進)을 데려가서 취조 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며 시신 인도를 요구했다. 가족과 동지들은 고문치사라며 원산서로 몰려들어 항의했다. 사망 다음 날인 3월 14일 데라다(寺田) 검사의 입회 아래 부검이 실시되었다. 당일 원산서 부근에는 정사복 경찰이 엄중 경계를 펼쳤고, 문 앞에서는 정복경관이 출입자를 일일이 조사했다. 원산서 고등계 실에는 박휘병의 친척 10명이 부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미칠 듯이 날뛰며 통곡과 합성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부검 결과 상해치사, 즉 구타와 고문에 의한 사망임이 밝혀졌다. 부친은 데라다 검사로부터 엄중히 취조할 테니 시신을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아들의 시신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⁴⁴⁾

박휘병의 장례는 3월 16일 고향인 당하리에서 사회단체장으로 치르기로 하고 가족과 동지들은 준비에 들어갔다. 그런데 바로 전날인 15일 밤에 원산서에서는 갑자기 강기덕(康基德)·송병식(宋秉植)·강주진(姜周鎭)·박성병(朴聖秉) 등 장례위원 전원을 검속했다. 부친은 이들이 석방된 뒤에 하겠다며 장례식을 중지했고, 장례위원들은 17일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풀려났다. 이로써 그의 장례식은 원래 계획한 다음 날인 3월 17일 정오에 가족 친

44) 「留置 九時間만에 被疑者 突然死亡」, 『東亞日報』 1933.3.15; 「檢束者 拷問致死한 三刑事 遂罷免, 즉시 형무소에 수용하였다, 元山署의 不祥事件」, 『每日申報』, 1933.3.17; 「12일에 피검, 13일에 급사」, 『中央日報』 1933.3.17; 「切痛하는 家族 今日 葬儀式」, 『東亞日報』 1933.3.17.

지와 동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러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사회장(社會葬)으로 치러졌다. 당일 경찰은 ‘박휘병 가(家) 부근 일시 통행금지’라는 문구를 내걸고 통제했다. 그 전날부터 서울 등 각지에서 와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 박휘병의 시신은 자택에서 발인한 후 선산인 대곡산(大谷山) 장지로 운구되었는데, 가는 길가에도 경찰이 엄중한 경계를 펼쳤다. 장례식은 ‘개식(開式) → 묵상(默想, 1분간) → 식사(式辭, 강기덕) → 조문(弔文, 강주석) → 애사(哀辭, 강기덕) → 약력(강병식) → 분향(焚香, 일동) → 영결가(永訣歌, 남녀 학생 일동)’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찰의 삼엄한 통제 아래 이렇게 “비장한 영별식을 거행”한 뒤에서야 박휘병의 시신은 안장될 수 있었다.⁴⁵⁾

한편 부검 결과 고문치사로 밝혀진 3월 15일 취조를 담당했던 고등계 형사 다카노 히데오(高野秀雄), 이와모토 고로(岩本五郎), 김창조(金昌朝) 등 3명은 원산검사국에 수감되었고 즉시 파면되었다. 그리고 부친 박승진은 장례식 다음 날인 3월 18일 이들 3명을 함흥지법 원산검사국에 정식으로 고소했다.⁴⁶⁾ 당시까지도 함경남도 경무과장은 언론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애매한 발언을 늘어놓는 상황이었으니, 고소 제기는 당연했다.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인지 완전히 별개의 원인에 의한 심장마비인지는 공정한 재판의 결과를 기다려 판명될 것이며, 이 경우 경솔한 판단은 할 수 없지만,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이러한 사건을 야기한 것은 매우 유감

45) 「元山署員 嚴戒裡에 朴輝秉의 同志葬」, 『東亞日報』 1933.3.18; 「今朝에 葬儀」, 『朝鮮日報』 1933.3.18; 「元山署에서 急死한 朴輝秉의 同志葬」, 『朝鮮日報』 1933.3.19; 「故 朴輝秉의 社會葬 舉行」, 『朝鮮中央日報』 1933.3.19; 「故 朴輝秉의 社會葬 舉行」, 『中央日報』 1933.3.19; 「16일 사회단체장, 고향인 원산부 당하리에 서」, 『新韓民報』 1933.4.13.

46) 「朴輝秉의 父親은 警官을 告訴, 十八日 咸興檢事局에」, 『朝鮮日報』 1933.3.19; 「朴輝秉 父親이 三警官 告訴, 元山檢事局에 提起」, 『朝鮮中央日報』 1933.3.21.

이라고 생각합니다.⁴⁷⁾

데라다 검사는 3월 25일 가해자 3명을 ‘독직, 상해치사죄’로 기소하고 이들을 예심에 회부했다.⁴⁸⁾ 3월 24일부터 원산서 유치장에서는 사상관계 피의자 십수 명이 단식동맹을 단행하고 일제히 애국독립가를 고창하며 옥중투쟁을 전개했다.⁴⁹⁾ 5월 3일 가해자 3명 모두 ‘유죄’가 인정된 가운데 예심이 종결되었고, 이들은 함흥지법 공판에 회부되었다. 6월 5일 재판에서 3명 모두 고문한 사실을 시인했고, 사건을 담당했던 마쓰마에 검사는 다카노에게 징역 3년, 이와모토와 김창조(金昌朝)에게는 각기 징역 2년을 구형했다.⁵⁰⁾ 당시 마쓰마에 검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논고했다.

적어도 금일의 경관으로서 고문으로 증거를 얻고자 한 것이 근본부터 틀렸고, 더구나 복잡다단한 사상관계의 피의자를 고문하여 자백 얻는 것은 지금의 법률이 용서치 않는 바이다. 법률문제는 말그대로 인도상으로 도저히 용서치 못한다.⁵¹⁾

당시 언론에서도 ‘박휘병 사건’은 “조선에서 이러한 유(類)의 사건의 가장 실증적인 전형(典型)을 제시한 점”, “검찰관이 경찰관의 고문의 폐해를 통론(痛論)한 점 등에 주목하며 “미래에 대한 주의로써 경정”해야 한다고 논

47) 「咸鏡南道, 心臟麻痺の原因は巡查の暴行からか否?, 黑白は裁判の結果に待たねば 石川咸南警務課長談」, 『朝鮮新聞』 1933.3.19.

48) 「瀆職, 傷害致死罪로 起訴키로 決定, 피해자의 부친이 고소제기 元山署의 急死事件」, 『毎日申報』 1933.3.25; 「元山署 三刑事 豫審에 廻附, 廿五日 독직상해치사죄로 寺田檢事が 起訴」, 『中央日報』 1933.3.27.

49) 「新韓民報」 1933.4.27.

50) 「拷問警官에 懲役三年求刑」, 『東亞日報』 1933.6.6.

51) 「時評: 拷問致死事件 公判을 보고」, 『朝鮮中央日報』 1933.7.8.

했다.⁵²⁾ 그런데 각기 징역 3년과 2년의 실형을 구형한 검사의 주장과 달리, 6월 12일 재판 결과는 이들 모두의 은급(恩給) 취소와 함께 다카노에게만 징역 2년의 실형이 언도되었고, 나머지 둘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나오게 되었다. 혼자만 실형을 받은 다카노는 그 자리에서 잠시 졸도했다가 일어나서 원통하다며 즉시 항소했다.⁵³⁾ 검사 측에서 항소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마쓰마에 검사는 2명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데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앞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박희병 사건’에 연이어 발생한 ‘북청농민조합 조우 사건’ 때에는 작심하고 항소함으로써, 1930년대 들어 거듭되는 고문 경찰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그런데 3개월 남짓 지난 뒤인 1933년 9월 22일 유족들은 경성지법 민사부에 우가키 총독을 상대로 고문치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부친 박승진, 모친 홍보인(洪保仁), 처 김병한(金炳漢)은 변호사 원택연(元澤淵)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3인에 해당하는 위자료 합계 5,000원을 청구했다. 직무수행 중에 일어난 불법 사건인 만큼 그 사용인인 ‘나라 대표’로 총독에게 제기한 것으로서, 부와 모가 각기 1,500원, 처는 2,000원으로 계산한 것이었다. 이 사건은 “조선 사회운동이 일어난 이후 처음으로 있는 희귀한 소송사건”으로 다시 한번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제소 다음 날인 9월 23일 일간 신문들이 모두 이 사건을 보도함으로써 한때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⁵⁴⁾

52) 「拷問致死事件의 公判, 今後 弊害根絶이 必要」, 『朝鮮日報』 1933.6.8.

53) 「元山署 殺人巡査 言渡法廷에서 卒倒, 岩本金의 兩名은 三年執行猶豫, 高野部長은 二年體刑」, 『朝鮮日報』 1933.6.13; 「殺人警官 控訴, 체형 이년이 원통타고」, 『朝鮮日報』 1933.6.16.

54) 「宇垣總督 相對로 慰藉 五千圓 請求, 拷問에 죽은 朴輝秉의 遺族들이, 思想關係로 初有事」, 『朝鮮日報』 1933.9.23; 「拷問致死 慰藉料를 總督 相對로 提訴, 3인분 5천원을 청구한 원산 박희병 유족」, 『東亞日報』 1933.9.23; 「朝鮮總督 相對로 五千圓 慰藉料를 請求, 拷問으로 죽은 朴輝秉의 遺族이 刑事有罪判決 根據로」, 『朝鮮中央日報』 1933.9.23.

이 사건의 제1회 공판은 1933년 10월 25일 경성지법 민사부 제1호 법정에서 오노(小野) 재판장의 주심으로 열렸다. 사건의 피고인 조선총독의 대리로는 경무국의 야기(八木) 사무관이 나섰다. 이와 같은 성격의 소송사건은 처음이다 보니 사법당국에서도 고심할 수밖에 없었으며, “사계의 권위 있는 일반 학자 간에도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했다. 예컨대 미노베(美濃部)는 국가 보상 의무가 없다고, 가와나(川名)나 오다(織田)는 당연히 국가 보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⁵⁵⁾ 이러한 상황에 대해 소송대리인 원택연 변호사는 국가의 보상은 당연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⁵⁶⁾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국가에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미농부 박사의 설에 의하면 통치권은 公權이므로 공권 행사에 의한 사업은 민법 제715조의 사업에 해당치 아니한 것이며, 민법은 私法이므로 역시 해당치 아니라고 하는 것이나, 이것은 결국 민법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진보와 함께 사회 관념도 진취되는 것이므로 국가보상법의 제정도 사회 관념의 한 발전으로 볼 수 있으니, 개인의 권리도 이에 따라서 존중히 여겨야 할 뿐 아니라, 민법 제715조의 사업은 일체의 사업을 포함한 것이므로 국가통치도 이에 해당되는 것이며, 공법과 사법의 구별은 공권을 규정하느냐? 사권을 규정하느냐?에서 구별이 있는데, 비록 국가통치권과 같은 공권 행사에 의한 불법행위라도 그 발생한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은 사권이니만치 민법 제715조에 의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55) 미노베는 법학자, 헌법학자, 정치가로 도쿄제대 교수였던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 達吉, 1873~1948)로 보인다. 천황기관설을 주장했으며,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대표적 이론가이다. 가와나는 법학자, 특히 민법 전문가로서 도쿄제대 교수를 지낸 가와나 가네시로(川名兼四郎, 1875~1914)로, 오다는 법학자로 리츠메이칸대학 명예총장이었던 오다 요로즈(織田萬, 1868~1945)로 추측된다. 오다는 행정법 전문가로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 판사를 지냈다[『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

56) 「補償法에 依하여 五千圓 請求한 故 朴輝秉 遺族의 訴訟, 十一月 六日에 判決, 『朝鮮中央日報』 1933.10.26.

민법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비판하면서 “사회의 진보와 함께 사회 관념도 진취되는 것”이므로 국가 보상은 당연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법정에서 원택연은 가와나 및 오다의 논리를 근거로 “공권 행사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일어난 피해는 민법 제715조에 의한 사법상(私法上)의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으며, 이에 대해 피고 측에서는 “국가의 경찰권 행사와 같은 순전한 공권 행사의 작용에 의하여 탄 사람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민법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미노베의 학설로 응수했다. 이렇게 총독 제소와 남겨진 자들의 위자료 청구로까지 이어진 ‘박휘병 사건’은 조선에서 민법에 대한 해석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당시 『매일신보』에서도 “이 사건의 판결은 심히 민법상 중대한 의의를 띠게 되었다”고 보고 있었다.⁵⁷⁾ 11월 6일에 진행된 최종 재판의 결과는 결국 원고 패소(敗訴)로 끝났다.⁵⁸⁾ 원고 측, 즉 박휘병의 유족들도 더 이상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항일운동가로서 고문치사를 당한 피해자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사회단체나 지식층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것 같다. 박휘병 집안은 지역사회에서 항일운동가를 다수 배출한 집안이었음에도, 이 소송의 과정에서 그의 동지들이 함께하고 있는 모습도 언론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최초’라는 의미, 법리상 논쟁의 의미를 넘어서, 193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평범한 조선인이 국가 폭력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57) 「法廷에 對立展開된 두가지의 法理論,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한 拷問致死事件 辯論」, 『毎日申報』 1933.10.26; 「拷問致死に民法上の訴訟, 如何に裁かれるか」, 『京城日報』 1933.10.26.

58) 「國家를 相對로 한 慰藉請求敗訴 공권행사의 불법행위로 입은 被害는 지지 않는다」, 『毎日申報』 1933.11.7.

식민지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근대 사회에서 일반적인 자유로운 개인의 존재와 이들의 인권 의식의 성장,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발전이 있었음을 보여준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비록 실패했다고는 해도 이 사건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가 폭력에 대한 국가 보상’의 문제를 제기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맺음말

근대국가에서 고문 행위와 그로 인해 ‘예정’된 고문치사 문제는 법치국가라는 명목에도 불구하고 법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법치의 영역을 넘어서 인간의 정치성이나 도덕성 등이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았다. 근대 사회에서 ‘고문받지 않을 권리’와 같은 것은 법적 규정일 뿐으로, 현실 세계에서 고문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늘 존재해왔다.

‘문화통치’를 표방했던 1920~30년대 식민지 조선사회도 그러했는데, ‘사상범’이나 ‘정치범’으로 지목된 항일운동가들에 대한 고문은 극심했다. 1920년 태형제도의 폐지가 ‘문화통치’로의 전환의 상징으로 선전되고 식민지 조선인은 당연히 이를 ‘심문 과정에서 고문의 폐지’로 받아들이던 상황에서 1920~30년대에 줄곧 일상적으로 고문은 만연했고, 이로 인한 고문치사 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초반 사이에 혁명적인 대중투쟁과 조직운동이 함경도 등지를 중심으로 확산해가면서 고문치사 사건은 더욱 빈번해졌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 여론도 높아져 갔다. 하지만 가해자의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사례가 더 많아져 갔다.

본론의 2장에서는 1919년 8월부터 1937년 7월 사이에 일어난 항일운동가 고문치사의 현황과 성격을 당대 신문 기사 사례 20여 건과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서훈된 인물의 사례 총 125건을 통해 살펴 보았다. 항일운동가 고문치사자는 연령별로는 20~30대가 70%를 넘어 압도적으로 많았고, 지역적으로 함경남북도 출신이 많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이는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대 전반기의 사회주의 계통의 사상 사건과 혁명적 대중조직운동이 함경도에서 많이 전개된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장에서는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대응 양상, 즉 부검과 가해자 고소, 조사와 법정 공방, 동지장을 통한 추모 등과 함께 피해자 측의 대응이 절정에 달했던 ‘박휘병 사건’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1933년 함남 원산서에서 일어난 ‘박휘병 사건’은 1930년대 들어 가해자인 고문 경찰들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는 속에서, 피해자 유족 측이 우가키 조선총독을 상대로 5천 원의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다. 이는 “조선 사회운동이 일어난 이후 처음으로 있는 희귀한 소송사건”으로서, 사법당국은 물론 일본 민법학계에까지 법리 논쟁을 불러 일으킨 사건이었다. 물론 재판의 결과는 패소로 끝났지만,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 자유로운 개인의 인권 의식의 성장, 개인과 국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발전을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 또한 이 사건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국가 폭력에 대한 국가보상’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논문투고: 2022.12.15, 심사완료: 2023.01.11, 게재확정: 2023.01.11)

참고문헌

〈자료〉

- 『朝鮮日報』, 『東亞日報』, 『每日申報』, 『中央日報』, 『朝鮮中央日報』, 『新韓民報』, 『朝鮮新聞』, 『京城日報』, 『新韓國報』, 『釜山日報』 등
「安錫喆 및 任正淳의 不逞鮮人에 拉致 件」, 1920.10.4., 『不逞團關係雜件-朝鮮人の 部-在滿洲의 部 22』(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제국국회 속기록으로 보는 헌법제정과정」, 『헌정사자료DB』(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DB)

독립유공자 공적조서(국가보훈처 공훈전자자료관)

ウィキペディア(Wikipedia)(야후재팬)

〈연구서〉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 각 권
도면희, 『한국 근대 형사재판제도사』, 푸른역사, 2014
마쓰다 토시히코, 이종민·이형식·김현 옮김,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와 경찰』, 경인문화사, 2020
미셸 푸코, 『감시와 처벌』, 나남, 2022(개정 2판 4쇄)
박경목, 『식민지 근대감옥, 서대문형무소』, 일빛, 2019
변은진, 『허헌 평전 - 항일운동의 선봉에 선 인권변호사』, 역사공간, 2022
심희기, 『한국법제사 강의』, 삼영사, 1997
우에노 나리토시, 정기문 옮김, 『폭력』, 산지니, 2006
체사레 베카리아 지음, 볼테르 해설, 김용준 옮김,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 이다북스, 2022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경인문화사, 2012

〈연구논문〉

- 김국화, 『101인 사건을 통해 본 일제하 형사재판(1925~28)』, 성균관대 박사논문, 2020
김우철, 「조선후기 推鞠 운영 및 結案의 변화」, 『민족문화』 35, 2010

- 김태천, 「고문의 정의 - 고문방지협약의 국내적 적용과 관련하여」, 『저스티스』 87, 2005
- 변은진, 「신문 기사를 통해 본 일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1920~1936)」, 『남도문화연구』 47, 2022
- 手塚豊, 「明治初年の拷問制度:その廢止過程の一研究」, 『法學研究』 25, 慶應義塾大學 法學研究會, 1952
- 염복규, 「1910년대 일제의 태형제도 시행과 운용」, 『역사와 현실』 53, 2004
- 오향녕, 「조선시대 추안(推案)에서 만난 주체의 문제」, 『中國語文論譯總刊』 34, 2013
- 윤민재, 「한국의 의문사 현황과 해결 방안」, 『민주평화연구』 3권 1호, 2020
- 한인섭, 「이인 변호사의 항일 변론 투쟁과 수난」, 『애산학보』 44, 2017

[ABSTRACT]

The Torture Murder of Anti-Japanese Korean Activists in the 1920s and 30s and the ‘Park Hwi-Byung case’

Byun, Eunjin

Torture and torture murder in modern states are examples of the fact that the rule of law is not implemented despite the name of a country under the rule of law. In modern society, such as the ‘right not to be tortured’ is only a legal regulation, and in the reality, torture has always existed beyond time and space. Colonial Joseon society in the 1920s and 1930s, which advocated ‘cultural rule’, was no exception, especially for anti-Japanese activists who were cited as ‘thought criminals’ or ‘political criminals’. In Chapter 3 of the main body, the current status and nature of the torture deaths of anti-Japanese activists between August 1919 and July 1937 were examined through 20 newspaper articles of the time and 125 cases of people who were currently ordained as ‘independence patriots’. Anti-Japanese activists who were tortured to death are overwhelmingly from Hamgyeong North and South Provinces. These characteristics reflect the situation in which many revolutionary red peasant and labor movements in Hamgyeong-do from the late 1920s to the first half of the 1930s were developed. Chapter 3 examined the

general response to the issue of torture murder of anti-Japanese activists and the 'Park Hwi-byung case', in which the victim's response reached its peak. This case in 1933 was a case in which the bereaved family of the victim filed a lawsuit against the Governor-General of Joseon for 5,000 yen in alimony. Although the trial result of the civil suit ended in defeat, this case illustrates the free existence of individuals, the growth of human rights awareness, and the development of awaren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the state in colonial Joseon society. It was also the first meaningful event in Korean history that raised the issue of 'state compensation for state violence'.

Key words : Torture Murder, torture, 'Cultural rule', Flogging Act, Park Hwi-byung, Anti-Japanese Activists